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13
----------	-------

발의연월일 : 2026. 10. 6.

발 의 자 : 엄태영 · 이소희 · 권영진
김재섭 · 서천호 · 강명구
조경태 · 박덕흠 · 이상휘
안철수 · 이종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주거 · 의료 · 복지 · 여가 기능을 갖춘 은퇴자 친화형 마을을 조성하고 은퇴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는 경우 신규 시설의 공급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기반시설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사업비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은퇴자마을지구와 인접한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업자가 기존 기반시설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관련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필요한 기반시설을 중복으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

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존 기반시설과의 연계·활용이 더욱 중요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우선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중 은퇴자마을지구와 인접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연계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기본계획 및 지구계획에 연계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기반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은퇴자마을사업자가 연계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상호 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등).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481호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연계개발사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중 은퇴자마을지구와 인접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연계개발사업 기반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은퇴자마을사업자가 제16조의2에 따른 연계개발사업 기반시설의 공동활용 및 연계를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연계개발사업 기반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계획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연계개발사업 기반시설의 공동활용 등) ① 은퇴자마을사업자는 연계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연계개발사업으로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은퇴자마을지구의 기반시설과 연계할 수 있다.

② 은퇴자마을사업자와 연계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공동활용 또는 연계에 관한 비용 부담, 관리 주체 등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공동활용·연계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481호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법률 제21481호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연계개발사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중 은퇴자마을지구와 인접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생략) 제3조(은퇴자마을 구성에 관한 기본계획)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은퇴자마을 구성에 관한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8. (생략)	8. <u>연계개발사업 기반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u>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생략)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생략)

<신 설>

제15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은 퇴자마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지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은퇴자마을사업자가 제16조의2에 따른 연계개발사업 기반시설의 공동활용 및 연계를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

[illegible]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 8.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설>

4의2. 연계개발사업 기반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계획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연계개발사업 기반시

설의 공동활용 등) ① 은퇴자

마을사업자는 연계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연계개

발사업으로 설치되었거나 설치

될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

하거나 은퇴자마을지구의 기반

시설과 연계할 수 있다.

② 은퇴자마을사업자와 연계개

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

에 따른 기반시설의 공동활용

또는 연계에 관한 비용 부담,

관리 주체 등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공동활용·연계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방

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